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2월 16일  
행정재경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6일, 도병두 의원 및 이인식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6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2월 1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도병두 의원)

### 가. 제안이유

- 최근 많은 건설·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의 발생이 급증하여 지역사회와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실효적인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종합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과 지역사회, 종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및 제6조)
- 중점관리대상 지정·운영(안 제7조)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교육 및 홍보(안 제8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① 제정 배경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던 중,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이러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1.26 제정되어 2022. 1.27 시행되었음.
- 그러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의무부과, 처벌 및 양벌규정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의 역할 규정이 미비해 실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해,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② 주요 사항별 내용

-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함.
- 안 제3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실시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음.
- 안 제6조에서는 민관협력기구 구성에 대한 내용과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 지정·관리 대상을 규정해 사전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
- 안 제8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③ 종합의견

-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자체 및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에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